## KOSHA GUIDE

C - 64 - 2018

- (4) 인력운반작업을 할 경우에는 운반물이 다른 물체에 부딪히지 않도록 사전에 운반 경로를 확인하고, 운반물이 전방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(5) 운반경로의 바닥면 등에 돌출물이 있을 경우에는 넘어짐 재해예방을 위하여 즉시 제거하고, 바닥면은 미끄럽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한다.

## 4.1.3 수레 운반

- (1) 수레 등 운반용구를 이용하여 자재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각륜, 볼트 체결, 용접 상태 등 각 부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보완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(2) 운반경로에는 돌출장애물이 없도록 조치하고, 시야를 확보하여야 한다. 또한 운반물은 운반도중 이탈되지 않도록 로프 등을 이용하여 견고히 고정시켜야 한다.
- (3) 수레에는 과다의 자재 적재를 지양하고, 수레운반 작업 시 뛰는 행동 등 과속운반을 하여서는 아니된다. 또한 반드시 앞에서 끌어 운반하고, 가능한 2인 1조로 운반하여야 한다.
- (4) 건축물 각 층에 설치된 건설용 리프트 승강구내에서 자재운반용 수레를 사용할 경우에는 안전한 통행로를 설치하고, 건설용 리프트의 운반구가 도착하지 않은 층의 출입문은 항상 닫혀 진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.

## 4.1.4 차량계하역운반기계 운반

- (1) 차량계하역운반기계를 이용하여 운반할 경우에는 부딪힘, 깔림 등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을 작성하고, 그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한다.
- (2) 차량계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운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기계의 넘어짐, 굴러 떨어짐 및 기계와의 접촉 방지를 위하여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. 또한 지반의 부등침하 방지 및 갓길 붕괴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.